#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05 발의연월일: 2022. 4. 12.

발 의 자:전용기·박 정·장철민

박광온 • 오영환 • 전재수

김영배 · 김두관 · 윤준병

김병기 · 노웅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산업 관련 현행 지원제도 및 진흥계획은 주로 게임개발, 유통과 배급,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영업비밀 등의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게임 플랫폼 해킹의 위협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지원사항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의 게임산업 기술개발 추진사항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신설).

#### 법률 제 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u>및 활용</u>